

[] 동물용의료기기
[]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
수입업 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 (대표자)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 소	(전화번호 :)	
수입 업소	명 칭(상호)		
	소재지		
업종 구분			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료기기(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)의 수입업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가.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(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) 각 1부 나.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명세서 각 1부 다.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 2.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가.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(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)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(법인은 제출하지 않는다) 각 1부 나.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명세서 각 1부 다.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	수수료 30,000원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

처 리 절 차

